

## 1. 개정이유

현행 규정이 일부 과거 법령을 인용하거나, 폐지된 표준을 참조토록 규정하고 있어 현재 유효한 법령과 표준을 준수하도록 현행화하려는 것임

## 2. 주요내용

- 가. 데이터 교환형식을 현재 유효한 표준인 지리마크업언어로 수정함  
(안 제5조)
- 나. 지형지물 코드를 현재 유효한 표준인 수치지도 지형지물 코드 표준으로 수정하고 별도의 지형지물 코드를 생성해야 할 경우 現 「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」 제7조에 따른 전문위원회 검토를 받도록 함(안 제6조)
- 다. 위치의 기준을 現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3항을 따르도록 함(안 제7조)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국가공간정보 기본법」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- 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## 기본공간정보 구축규정 일부개정고시안

기본공간정보 구축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의 제목 중 “데이터”를 “데이터”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 
전단 중 ““파일 기반 기본지리정보 교환표준”과 “GML 기반 기본지리정  
보 교환표준”을”을 “법 제21조에 따른 국가표준인 지리마크업언어(GM  
L)를”로 한다.

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“수치지형도제작을 위한 지형지물 통합표  
준”을 각각 “수치지도 지형지물 코드 표준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중 “기본  
공간정보분과위원회 심의”를 “「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」 제7조에  
따른 전문위원회 검토”로 한다.

제7조 중 “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법률”을 “「공간정보의 구축  
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”로 한다.

제10조 중 “2018년 1월 1일”을 “2024년 7월 1일”로, “12월 31일”을 “6월  
30일”로 한다.

## 부 칙

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데이터 교환형식) 기본공간 정보의 교환형식은 “파일 기반 기본지리정보 교환표준”과 “GML 기반 기본지리정보 교환표준”을 원칙으로 한다.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외부공개를 위해 구축한 공간정보 오픈 플랫폼에서 호환될 수 있는 형식이어야 한다.</p>	<p>제5조(데이터 교환형식) -----                      ----- 법 제21조에                      따른 국가표준인 지리마크업언                      어(GML)를 -----                      -----.                      -----</p>
<p>제6조(지형지물 코드) ① 기본공간정보의 지형지물 코드는 “수치지형도제작을 위한 지형지물 통합표준”에서 정한 지형지물 코드를 적용한다.</p> <p>② 기본공간정보의 지형지물이 “수치지형도제작을 위한 지형지물 통합표준”과 일치하는 지형지물이 없을 경우에는 별도의 지형지물 코드를 생성하여 사용할 수 있다.</p> <p>③ 제2항의 별도 지형지물 코드는 “수치지형도제작을 위한 지형지물 통합표준”의 대분류 체계를 준수하여야 하며, 기본공</p>	<p>제6조(지형지물 코드) ① -----                      -----수                      치지도 지형지물 코드 표준-----                      -----.                      -----</p> <p>② -----                      --수치지도 지형지물 코드 표                      준-----                      -----                      -----.</p> <p>③ -----                      ---수치지도 지형지물 코드 표                      준-----                      ----- 「국가공</p>

간정보분과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.

제7조(위치의 기준) 기본공간정보의 위치기준은 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법률 제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며, 기본공간정보의 효율적 구축 및 활용을 위하여 단일평면직각좌표계를 도입할 수 있다.

제10조(재검토기한) 국토교통부장관은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간정보 기본법 시행령」 제7조에 따른 전문위원회 검토-----  
-.

제7조(위치의 기준) -----  
-----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제10조(재검토기한)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2024년 7월 1일 -----  
----- 6월 30일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